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2차)

개최일시	2018.01.10(수) 15:00~17:00	회의장소	대학원별관 204호
참석자 (13명)	김상택(기획처장), 도재형(총무처장), 류한영(재무처장), 이공주복(교무처장), 최성희(학생처장), 최혜련(예산팀장), 차안나(학부 총학생회장), 정한경(학부 총부학생회장), 김혜린(동아리연합회 회장), 문지영(대학원 학생회장), 신혜슬(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안현주(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 이상은(삼일회계법인)		
불참자 (0명)			
안건	서기록 작성 관련 논의 및 2017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내용	■ 개회 -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부재하나 총 13명의 위원 중 과반수인 12명이 출석하여 회의개최 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다. 제 2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를 개최하고, 지난 회의에서 논의를 마무리 짓지 못했던 회의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하다. 잠시 후 기획처장 배석하다. ■ 회의내용 1. 논의사항 가. 1차 회의 이월 1) 회의록 작성 - 위원장은 1차 회의에서 학생측 서기가 속기록 작성 시 학교에서 제공하는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으므로 본 회의에서는 노트북을 어떻게 할지 먼저 논의하자고 제안하다. - 예산팀장은 학교의 중요한 사항을 다루는 회의인만큼 학교에서 제공하는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다. 회의 장소 제공과 마찬가지로 공적인 제공임을 설명하다. - 재무처장은 어느 컴퓨터로 작성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다. 공식적인 회의의 논의사항을 개인 장비를 사용해 기록하는 것이 안된다고 말하다. - 위원장은 학생 위원에게 학교 측 노트북이 아닌 개인 노트북으로 속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묻다. - 총부학생회장은 학교측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이 공식적이기 때문에 학		

	교측 노트북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학교측 노트북을 사용해 속기록을 작성하게 되면 학교측에서만 속기록을 보유하게 되는 것인데, 학생측 위원들도 중앙운영위원회에서의 논의 등을 위해 속기록이 필요함을 말한다. - 위원장은 등심위원들 모두 속기록을 열람하는 것이 가능한지 묻다. - 총부학생회장은 속기록 파일 자체가 위원들 사이에서 공유가 되는 것인지 묻다.
	- 재무처장은 속기록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자 함이지 위원들의 열람을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 총부학생회장은 위원회 회의록 초안이 위원들의 메일로 공유가 되는 것처럼 쌍방의 속기록이 공유가 되는 것인지 묻다. - 예산팀장은 2014년도에 속기록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공유했는지 확인해보고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말한다. - 총학생회장은 과거와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묻다. - 총무처장은 법적으로는 회의록만을 작성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과거에 회의록 작성을 위해 속기록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합의가 진전되지 않다가 2014년에 합의가 된 것임을 설명하다. 따라서 과거의 합의 사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 총학생회장은 학교측과 학생측이 번갈아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되,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하기로 한 것이기에 양측의 속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학교 측은 쌍방의 속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나 학생측은 그렇지 못함이 불평등하다고 말한다. - 위원장은 교수위원과 외부위원이 열람하는 속기록을 학생위원도 열람할 수 있어야 함은 분명하다고 말한다. - 엘텍공과대학 학생회장은 쌍방의 속기록을 공유하는 것인지 묻다. 학교 측은 학생측의 속기록을 보유하고 학생위원은 학교 측의 속기록을 보유하지 못하는 것이 불평등함을 말한다. - 예산팀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가 없다고 말한다. 학생 측 서기가 작성한 속기록을 문서 또는 파일의 형태로 학생 위원들이 가져가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노트북에서는 파일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다.

	- 위원장은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논의를 종결짓고 2017학년도 추경예산 심의를 할 것을 제안하다. - 총부학생회장은 2014년도에 속기록 공유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확인한 후 차기 회의에서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다. - 예산팀장은 선례를 확인 후 안내하겠다고 답하다. - 총무처장은 용어를 속기록이 아닌 서기록으로 명시해달라고 요청하다. - 위원장은 2014년도의 사례에 대해 확인한 후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하다. 나. 본 회의 안건 1) 2017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재무처장이 2017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해 각 수입, 지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다. - 총학생회장이 사전에 제공받은 2017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학년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질문하고자 함을 말하다. 수입부의 전기자금이월금 항목에 대해 당초 충분히 예측가능한 전기자금이월금의 당초 예산과 추경 예산의 차이가 큰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다. 더불어 해당 부분이 2018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다. - 예산팀장은 예산 편성 당시 예산의 목적에 맞게 전부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업 집행 과정에서 사업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월금이 발생하는 것은 당초에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하다. 올해의 경우 국고 사업 관련하여 예상치 못했던 이월금이 발생했다고 답하다. - 총학생회장은 사전 제공 자료를 토대로 질문을 계속하다. 법정부담전입금에 대해 법적으로 학교법인이 100% 부담해야 하나 현재 60.7%밖에 부담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다. 더불어 법인이 지불해야 하는 교원법정부담금과 직원법정부담금을 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한 것에 대해 법인의 책임을 교비 회계에 전가시킨 것이 아닌지 지적하다. 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을 모두 부담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교육부의 승인 절차를 거친 것인지, 대학 평가지표에 법인 책무성 항목이 포함된 것을 반영해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묻다. - 예산팀장은 법적으로 법인이 100% 부담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학연금법정부담금에만 해당한다고 답하다. 법정부담전입금을 법인이 100% 부담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현재 법적으
--	---

	로는 사학연금법정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강제되고 있음을 설명하다. - 외부위원은 등록금 수입이 37억원 감소한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다. - 재무처장은 충원을 감소로 인한 등록금수입의 감소라고 설명하며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는 이상 등록금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정원 외 학생이 많아지거나 충원률이 100%가 되는 방식이 있지만 사실상 힘들다고 말하다. 충원률이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입에서 감소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말하다. - 외부위원은 앞으로 병원전입금이 감소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하다. - 재무처장은 차기 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해 발제할 때 병원 부분의 상황이 나아질 여지가 없기 때문에 2018학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다. - 총학생회장은 전기자금이월금에 대해 추가로 질문하다. 과거 자료를 보면 추경예산보다 당초 예산이 15학년도에는 20억, 16학년도에는 20억, 17학년도에는 40억 낮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는 예측을 잘못된 것이 아니라 수입을 축소시켜 편성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다. - 예산팀장은 매년 학교 각 부서에 계획한 사업을 집행하고 이월금을 남기지 않도록 독려하나, 예상 가능한 부분이 제한적임을 답하다. 학생위원의 지적을 부서에 전달하겠다고 말하다. - 외부위원은 지연된 공사에 대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인지 묻다. - 재무처장은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하다. 입찰 과정에서의 변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없다고 설명하다. - 학생처장은 토지건축기금과 기금인출 부분이 관련이 있는 것인지 묻다. - 재무처장은 관련이 있으며, 공사 지연으로 인해 건축기금이 인출되지 않고, 토지 매각으로 인해 기금이 적립된 것이라고 설명하다. - 총학생회장은 법정부담전입금에 대하여 추가질문하다. 교직원의 사학연금이 감소했기 때문에 법인전입금이 당초보다 12억 감소했다고 추가경정예산에 표기가 되어있음을 말하다. 원칙적으로는 법정부담전입금을 법인이 100% 부담해야 하는데, 사학연금 지표가 줄었다고 법인전입금도 감소시킨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다. 법인 책무성 지표에 대해 고려를 한 것인지 질문하다.
--	---

	- 예산팀장은 법인에 학교의 법정부담금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학교 예산팀이 법인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학교와 법인의 회계가 분리되어 있음을 설명한다. - 총학생회장은 학교예산과 법인 예산을 분리해 운영한다면 법정부담전입금을 100% 납부하는 것을 학생 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인의 면담을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 - 예산팀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설명한다. - 기획처장은 학교에서 법인에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설명하며 학생회 측에서 직접 법인에 공문을 보낼 것을 제안한다. - 총부학생회장은 법인 책무성과 관련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를 통해 법인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것이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설명한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법인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말한다. - 재무처장은 법정부담전입금에서 사학연금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 평가 시 감점이 없음을 말한다. - 총학생회장은 감점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록을 법인에 전달함으로써 법인의 책임을 다할 것을 알리자고 제안한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법인전입금에 법인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자산전입금 항목이 있는데, 본교의 법인은 이를 전혀 지불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다. - 재무처장은 자산전입금 관련 내용도 회의록에 상세히 기록하여 법인에 전달하는 것으로 이 논의를 마무리할 것을 제안한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는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데 법인이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이 예산이 학교 회계에서 지출되는 것인지 묻다. - 재무처장은 학교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은 학교 회계에서 지출됨을 설명한다.
--	---

	- 예산팀장은 현재는 건축기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등록금 회계에서 토지 및 건축비를 지출하고 있지 않으며, 토지 매각 대금은 건축 기금으로 적립함을 설명하다. -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법정부담전입금에 대해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추경 예산에서 사학 연금의 감소분을 이유로 축소시킨 것을 고려할 때 법인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사학 연금액만 부담해도 된다고 사고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제기하다. - 예산팀장은 법적으로 사학연금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담금액이 확정되는 결산 시점에 전입됨을 설명하다. - 총부학생회장은 위원들 전원이 법인 책무성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 학교 측에서 회의록을 이사회에 전달하는 것 이상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을 요청하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학교 측에서 법인이 책무를 다하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질문하다. - 예산팀장은 예산 편성 시 법인 측에 법정부담금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은 대학원 충원율이 줄어 장학금 예산 규모가 줄어든 것에 대해 해당액을 연구 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질문하다. - 학생처장은 학교 수입 대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충원률이 감소하면 예산 편성도 감소하는 것이며 장학금도 줄어든 수 있다고 설명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은 대학원학생회에 대한 교비 지원이 동아리 수준인데 장학금 형식으로 연구비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다. - 예산 팀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전체적인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므로 개별 사업은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다. - 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지어야하므로 회의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말하다. -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적립금 중 건물의 감가상각에 대해 어떤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적립이 되는 것인지 질문하다.
--	---

	- 예산팀장은 건물가액을 법률이 정한 연한에 따라 건축기금으로 적립하며, 노후 건물 개보수 및 신축비용으로 사용함을 설명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는 예산 항목 중 내부거래제거가 무엇인지 질문하다. - 예산팀장은 교내 기관 간 거래내역에 대해 지출과 수입이 과대하게 보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계처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단기수강료에 대해 질문하다. - 예산팀장은 단기 수강료의 경우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학위강좌 수입으로 현재 외부수강생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답하다. - 외부위원은 이자 수입이 감소한 것에 대하여 예금이자율이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 이자 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하다. - 재무처장은 확인해보고 대답하겠다고 말하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전기자금이월금에 대해 집행율을 높이기 위해 독려를 했다고 해도 예년부터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었던 상황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하다. - 예산팀장은 회의록에 명시할 것을 제안하고, 내부 구성원들에게 공유하겠다고 말하다. -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특정기금에 대해 각 기관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질문하다. - 예산팀장은 특정기금은 각 기관 및 단과대학이 주체가 되어 모금 및 사용함을 설명하다. 특정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 및 단과대의 기금운영 위원회에서 기금의 인출 및 사용을 승인받고 기금의 목적에 맞게 기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학교 본부에서는 사용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특정목적기금에 대해 사립학교법상 기금의 목적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아 어떤 명목으로 기금이 적립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하다. - 예산팀장은 법 개정으로 인해 계정과목명을 기타기금에서 특정목적기금으로 변경했으며, 기금의 명칭과 목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	---

	말하다. 2018년 예산 심의시 특정목적기금에 대해 세부 기금명을 나열해서 보여주겠다고 말하다. 문답 [지안] 문 [지]-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보구여관에 대해 당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던 항목에 대해 지출이 생긴 이유를 질문하다. 산학협력관에 대해서도 갑자기 예산이 10억 지출된 이유에 대해 질문하다. - 재무처장은 산학협력관에 대해 교육부에서 교육용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지출한 것이라 설명하다. - 예산팀장은 보구여관에 대해 추가된 부분이라고 설명하다. - 재무처장은 서울시의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의과대학 건설 시 앞에 상징적인 것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는 추경예산의 기부전입금이 기부금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전입금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질문하다. - 예산팀장은 기부전입금 중 기부자의 기금적립을 목적으로 발생한 부분은 기금으로 적립됨을 설명하다. -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학생지원비에 대해 학생 요구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47%밖에 집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하다. - 예산팀장은 11월 30일 기준의 집행률을 설명하다. 각 기관 및 대학에서 사업의 진행 시기를 고려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사업 집행의 시점에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다. - 학생처장은 기타학생경비에 대해 지출이 줄어든 이유를 질문하다. - 예산팀장은 기타학생경비의 경우 단기수강료 수입이 감소해 지출이 감소한 것임을 설명하다. - 총학생회장은 회계연도가 2월에 마무리되는데 9달 동안 47%가 집행된 상황에 남은 3달 동안 53%가 집행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다. - 학생처장은 학생지원비의 경우 방학동안 집행되는 사업이 많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지원 예산 비율이 커서 11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음을 설명하다. - 총학생회장은 사전에 제공받은 자료와 위원회 장내에서 제공받은 자료
--	--

	의 세부 항목에 차이가 나는데, 예산 심의를 위해 장내에서도 집행을 등의 세부 항목을 포함한 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다. - 예산팀장은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시 집행을 포함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말하다. - 위원장은 추후에라도 열람을 원하는 자료는 요청을 하라고 말하다. -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집행율이 낮은 상황에 추가 경정예산을 확대 편성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다. - 예산팀장은 집행 시기는 각 기관 및 대학의 일정에 따라 진행하며, 추경예산 편성시 각 기관 및 대학에서 사업을 추가 계획하였음을 설명하다. -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기자재에 대해 각 기관에서 편성한 예산으로 운용하는 것인지 질문하다. - 예산팀장은 각 기관 및 대학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는 것임을 설명하다. - 재무처장은 외부위원에게 이자율 수입이 감소한 것에 대해 이전에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수익률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가입 당시 기금운용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소액을 투자했지만 시장상황이 변동되어 예상했던 수익이 발생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하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토지 건축비 항목 중 연구협력관에 대해 당초 예산에 비해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출이 감소함을 지적하며 지출부를 과도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지 질문하다. - 재무처장은 공사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지출이 예정되어 있던 부분이 지출되지 못한 것으로 설명하다. - 예산 팀장은 토지의 경우 교지 확보를 위해 학교 주변에 교지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18억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부풀린 것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하다. - 총무처장이 그럼 어느 정도 편성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다. 적정 가격의 토지가 있을 경우 매입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금액이라고 말하다.
--	---

	- 총학생회장은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질문하다. - 예산팀장은 토지는 집행액 만큼을 건축기금에서 인출한다고 답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은 시간강사료가 줄어든 것의 원인이 강사 수가 줄어든 있기 때문인지 질문하다. - 재무처장은 시간강사 월급이 임금 또는 시간강사료로의 형태로 나가는 것이지 사람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다. - 위원장은 2017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할 것을 제안하고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다. - 총학생회장은 법정부담전입금이 당초에 비해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소한 것에 대해 사학연금 부담이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축소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다. 더불어 학생 지원비와 학생 경비 집행율에 대해 집행율이 낮은 이유를 납득할 수 없으므로 2017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할 수 없다고 말하다. - 학생처장은 올해 회계연도 안에 부족한 법정부담금 12억을 더 받아야 승인할 수 있다는 것인지 질문하다. - 총무처장은 위원회의 내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위원회를 통해 심의 및 의결한다는 것을 말하다. 특정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라 과반수 투표로 결정할 것을 제안하다. - 외부위원은 예산 집행률에 대해 말로만 독려한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률이 낮은 단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한다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학생들이 승인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데에 동의를 한다라고 말하다.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 개선안이 나오지 않으면 승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다. - 위원장은 내년에는 예산 집행률이 낮은 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자고 말하다. 추가경정예산에서 집행률을 포함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중간단계에서 단위별 예산 집행율에 대해 확인한 이후 집행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야 할 것이라 말하다. - 예산팀장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다. - 위원장은 학생위원회에게 여전히 2017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할
--	---

	수 없는 것인지 질문하다. - 총학생회장은 여전히 승인할 수 없다고 말하다. - 위원장은 2017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승인을 표결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다. - 위원장은 2017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는 위원은 거수하라고 말하다. 교무처장, 재무처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외부위원, 대학원 학생회장이 거수하다. - 위원장은 2017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지 않는 위원은 거수하라고 말하다. 총학생회장, 총부학생회장,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동아리연합회 회장이 거수하다. - 위원장은 승인8인, 반대5인으로 2017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승인되었음을 말하다. - 재무처장은 법인의 승인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학생측 회의록 초안을 내일(1/11)까지 보내줄 것을 요청하다. - 총학생회장은 노력해보겠다고 대답하다. - 위원장은 오늘(1/10) 내로 학교측 서기가 1차 회의의 회의록 초안을 보내줄 것임을 말하다. 2차 회의록 초안을 내일까지 작성할 것을 요청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은 회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대학원 학생회에서 실시한 설문을 토대로 작성한 조교의 인권문제와 엄마원생에 관련된 요구안을 전달하다. 인권센터의 설치 및 대학원 학생들의 요구안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다. - 재무처장은 학교에서 제공한 노트북에서 작성된 학생측 속기록 파일을 USB를 이용하여 학생측 노트북으로 옮긴 후, 학교측에서 제공한 노트북에 있는 원본 파일은 삭제할 것을 제안하다. ■ 폐회 - 위원장은 3차 위원회를 1월 15일(월) 오후 4시에 개최하기로 확인한 후 폐회를 선언하다.
학 인	

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함

2018년 1월 10일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이공주복		위 원	김상택	김상택
위 원	도재형	도재형	위 원	류한영	류한영
위 원	최성희	최성희	위 원	최혜련	최혜련
위 원	문지영	문지영	위 원	차안나	차안나
위 원	정한경	정한경	위 원	김혜린	김혜린
위 원	신혜슬	신혜슬	위 원	안현주	안현주
위 원	이상은	이상은			
작 성 자	서기록 작성자 회의록 작성자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총학생회장	우 민 주	차 안 나	